

2017년 제2회 해양수산부 기술직(해양수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직(해양수산)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7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가.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총 29명)

직류(직급)	계	선발예정인원(소속기관별)										
		국립해양조사원	어업관리단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동해	서해	남해	인천	동해	마산	군산	목포	포항	
어로(9급)	13	-	5	3	5	-	-	-	-	-	-	-
선박항해(9급)	8	-	1	3	-	-	1	-	1	-	-	2
선박기관(9급)	8	4	-	-	-	1	-	1	-	1	1	-

* 임용 후 4년간 전보 제한(전보제한기간 종료 후 타 근무지로 전보 가능)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직류	주요 담당업무
일반수산	어로	어업지도, 단속 등 어업관리 업무
	선박항해	선박 운항 및 항해 관리 업무
	선박기관	

* 어로, 선박항해, 선박기관직류는 선박승선 근무 예정으로 채용

4.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최종시험 예정<면접>일 기준)

직렬	직류	직급	응시가능 연령
해양수산	어로	해양수산서기보(9급)	18세 이상('99.12.31. 이전 출생자)
	선박항해	해양수산서기보(9급)	
	선박기관	해양수산서기보(9급)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렬	직류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요건
해양수산	어로	해양수산 서기보 (9급)	■ 어로기술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어로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선박항해	해양수산 서기보 (9급)	■ 5급 이상 해기사면허(상선 또는 어선항해사) 취득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 자
	선박기관	해양수산 서기보 (9급)	■ 5급 이상 해기사면허(기관사) 취득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 자

※ 응시자격요건상의 경력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선발예정 직류 중복 응시 불가(동일 직류내 선발 예정기관 중복 응시 불가)

※ 응시자격(면허)증 소지여부는 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함

다. 기타 응시조건

- 1인당 1개 직류 및 1개 선발기관만 응시 가능
- 자격(면허)증은 당해 직류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이어야 함
- 원서접수일 기준 응시자격요건상 자격(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직류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자격(면허)증 취득이 예상 되는 경우 응시 가능
 - * 이 경우,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 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미 지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음
- 거주지 제한 없음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직무수행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여부 판단(소극적 방식)

* 서류전형 합격자는 '17.8.24(목)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

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직렬	직류	계급	시험과목	시험시간
해양 수산	어로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일반, 어업 (과목당 3문제, 주관식) ■ 영어 (70문제, 객관식) 	영어 : 80분 전공 : 100분
	선박 항해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일반, 항해 (과목당 3문제, 주관식) ■ 영어 (70문제, 객관식) 	
	선박 기관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일반, 선박기관 (과목당 3문제, 주관식) ■ 영어 (70문제, 객관식)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채용인원의 130% 합격"

* 채용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필기시험 합격자수를 결정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 심사방법

<9급>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 자기기술서 작성(30분), 5분 스피치 과제 작성(10분), 5분 스피치(5분), 질의응답(15분)으로 진행

* 5분 스피치 과제 작성은 응시순서에 따라 면접시험장 이동 직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작성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7.31(월)~ 8.16(수)	8.11(금)~ 8.16(수)	8.23(수)	8.24(목)	9.2(토)	9.8(금)	9.13(수)~ 9.15(금)	9.22(금)

- *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채용)에 게시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세부일시

직류	계급	선발인원		면접일자
어 로	9급	동해어업관리단	5	17.9.13(오전/오후)
		서해어업관리단	3	
		남해어업관리단	5	
선박항해	9급	동해지방해양수산청	1	17.9.14(오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1	
		동해어업관리단	1	17.9.14(오후)
		서해어업관리단	3	
		국립수산과학원	2	
선박기관	9급	국립해양조사원	4	17.9.15(오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17.9.15(오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	

- * 면접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최종 확정 및 안내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 접수일시 및 시간 : '17.8.11(금) ~ '17.8.16(수), 09:00~18:00

접수처	주 소	전화번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신관 2층 소회의실)	(우)601-726, 부산시 동구 총장대로 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주소 : www.portbusan.go.kr	051-609-624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층 운영지원과)	(우)530-420,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주소 : www.mokpo.mof.go.kr	061-280-1612

나.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소지자	1~2급은 과목별 만점의 5% 3급은 과목별 만점의 3%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금년부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폐지되었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 (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예: 2017년 시험인 경우 2014.1.1 이후 시험 인정)으로 필기시험 전날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등급별 점수(3~5점)를 가산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일 전일(2017.9.1),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 응시원서접수 이후에 가점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응시원서의 '가산특전 해당 사항란에' "(예시)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7.00.00 취득 예정" 이라고 표시
 -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가점 자격증 미제출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9. 기타 사항

- 시험은 각 직류별, 응시기관 단위별로 분리하여 시행(응시자는 직류별 선발예정기관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우편 봉투 (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우편접수시 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분실될 우려가 있고,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기 바람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서류전형)기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임
- 채용단위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됨
- 채용후보자 명부는 채용단위별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함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하는 임용유예가 불가능 함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78)로 문의 바람

10.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 여권판(3.5×4.5cm) 사진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전자수입인지 가능)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3. 응시요건(자격·면허)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응시요건 해당 자격증을 원서제출일까지 취득(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면접 시험일 까지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는 원서접수 시 1차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미지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 항해·기관직류 응시자는 해기사면허증 사본 및 승무경력 증명서 원본(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을 반드시 제출
4. 경력(재직)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해기사면허로 응시하는 자로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경력증명서에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6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하며, 어로직류의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불요
5. 가산점 관련 자료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증명서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인증서 원본(2014.1.1. 이후 시험만 인정) * 가산점 관련 자료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인정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필 기재 및 서명
7. 주민등록 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지)을 기재

② 관련분야경력 : 어로직류의 경우 경력 기입 불요, 선박항해·선박기관직류는 승선경력 기재

③ 응시자격증 및 면허 : 응시자격상 면허증, 자격증 사항을 취득일자 순으로 기재(응시요건 이외의 자격사항은 미기재)

④ 가산특전 해당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및 한국사검정능력시험 등급 소지 등 가산점이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

※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④번란에 기재하고 ③번란에는 기재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후 가산자격증 취득 예정자인 경우 취득예정일을 표기
예시) 2017.8.25 취득예정 시 → 종류 : 한국사검정능력시험 1급('17.8.25 취득 예정)

⑤ 직급 및 직류 : 응시직류, 계급을 정확히 기재(각 1개만 기재)

⑥ 응시기관 : 시험은 각 직류의 선발예정 기관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기관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1명이 동일 직류에 대하여 **2개 기관 이상 중복지원 불가능**)

* 공고문 1페이지 "가.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을 참고하여 선발예정기관 **1개만 기재**

『※』표시가 되어 있는 란은 기재하지 않음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구 분	세 부 서 류 (응시자 성명 :)
응시원서	사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이 력 서	성명, 생년월일 및 경력사항
기타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 (수집 · 이용목적) 2017년 제2회 해양수산부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 경력 조회 등
- ◆ (수집항목) 응시원서 및 이력서,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 ◆ (보유 · 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2017년 제2회 해양수산부 기술직공무원경력 경쟁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7. . .

성명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